

# 펀드 정기자동매수/자동이체매수/자동대체매수/분산 투자매수 서비스 약관

개정 2023. 10. 16.

**제 1조(목적)**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"펀드 정기자동매수/자동이체매수/자동대체매수/분산투자매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"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제 2조(용어의 정리)**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① 정기자동매수 :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매수주문일자에 고객의 펀드상품 매수계좌에 보유된 현금으로 자동매수 주문하는 서비스
- ② 자동이체매수 : 고객이 지정한 은행출금계좌에서 이체희망일자에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출금되어 익영업일에 고객의 매수계좌로 입금된 후 등록된 펀드상품을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
- ③ 자동대체매수 : 고객이 지정한 당사출금계좌에서 대체희망일자에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출금되어 고객의 매수계좌로 입금된 후 등록된 펀드상품을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
- ④ 분산투자매수 : 고객이 지정한 분산투자정보에 등록된 펀드상품을 보유현금으로 자동매수 주문하는 서비스
- ⑤ 이체희망일자 :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하는 일자로서 이체대상 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이 이행되는 일자. 단, 이체희망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자
- ⑥ 매수주문일자 :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하는 일자로서 매수대상 펀드상품에 대한 매수주문이 이행되는 일자. 단, 매수주문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자
- ⑦ 매수계좌 :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 할 펀드상품을 보유할 계좌
- ⑧ 은행출금계좌 :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매수를 위하여 출금될 매수신청금액을 보유한 은행계좌
- ⑨ 대체계좌 :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매수를 위하여 출금될 매수신청금액을 보유한 당사계좌
- ⑩ 매수신청금액 : 고객이 정기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, 자동대체매수 서비스 신청 시 펀드를 매수하기 위

하여 지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 지정한 펀드로 매수신청할 경우, 펀드매수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에 따라 매수좌수와 매수원금이 산정됩니다.

예시) 매수신청금액 = 101,100원 (선취수수료 없음으로 가정)

Case 1) 1원/1좌

매입좌수 :  $101,100\text{원}/1\text{원}=101,100\text{좌}$

매입원금 : 101,100원

Case 2) 1,000원/1좌

매입좌수 :  $101,100\text{원}/1,000\text{원}=102\text{좌}$

매입원금 : 101,100원

Case 3) 5,000원/1좌

매입좌수 :  $101,100\text{원}/5,000\text{원}=20\text{좌}$

매입원금 : 100,000원 (예수금: 1,100원)

### 제 3조(서비스 신청 및 해지)

- ①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신청 합니다.
- ②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시 약정한 이용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단,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4조(계좌 및 펀드상품의 지정)

- ① 은행출금계좌와 대체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고객 본인의 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에 한함)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, 고객이 가족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정기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의 대상이 되는 펀드상품은 고객이 기 매수주문한 펀드상품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를 통한 신규 펀드 가입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
### **제 5조(정기자동매수/자동이체매수/자동대체매수/분산투자매수 실행)**

- ① 정기자동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매수주문일자부터 실행됩니다.
- ② 자동이체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이체희망일자부터 실행됩니다.
- ③ 자동대체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대체희망일자/매수주문일자부터 실행됩니다.
- ④ 분산투자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신청 계좌에 입금되는 날 실행됩니다.
- ⑤ 정기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, 자동대체매수, 분산투자매수의 매수주문 처리시각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처리시각 기준으로 정하고, 펀드의 매입청구시점은 펀드 기준시점 이전 기준으로 매입 청구합니다.
- ⑥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게 펀드 자체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### **제 6조(정기자동매수)**

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매수주문일자에 매수신청금액(최소 10,000원)만큼을 정기자동매수 합니다. 매수계좌의 매수가능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매수신청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정기자동매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.

### **제 7조(자동이체매수)**

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출금계좌에 매수신청금액(최소 10,000원)만큼 출금요청을 하여 매수계좌에 입금 처리 한 후 매수신청금액만큼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출금요청일 익일 매수주문 합니다. 은행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또는 고객이 동의한 은행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체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이체매수가 되지 아니합니다.

### **제 8조(자동대체매수)**

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인출계좌, 인출금액을 매수계좌로 입금 처리 한 후 매수주문일자에 매수신청금액(최소 10,000원)만큼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매수합니다. 인출계좌의 인출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매수신청금액에 부족할 경우에 회사는 대체처리하지 않습니다.

### **제 9조(분산투자매수)**

회사는 고객이 펀드분산투자정보를 등록한 계좌에 분산투자 최소매수가능금액(10,000원)이 되면 등록된 비율의 금액대로 매수합니다.

## 제 10조(정기자동매수/자동대체매수 순서)

- ① 매수계좌에 정기자동매수일이 동일한 다수의 정기자동매수가 신청되어 있고 정기자동매수일에 매수계좌의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총 매수신청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펀드상품의 정기자동매수의 순서는 고객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고객의 정기자동매수신청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.
- ② 대체계좌에 다수의 자동대체매수가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 인출금액순서는 자동대체매수 신청시에 고객이 지정한 자동대체매수서비스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.

## 제11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

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## 제 12조(서비스 제공 중지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실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.

- ① 매수계좌, 은행출금계좌, 대체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
- ② 질권설정, 압류, 사고신고로 인해 대체계좌 또는 매수계좌의 자동매수, 자동이체매수, 자동대체매수, 분산투자매수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

## 제 13조(약관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4조(관할법원)**

①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,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**제 15조(기타)**

① 본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릅니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
<부칙>

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미래에셋대우 펀드 정기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 분산투자매수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<부칙>

제정 2004년 03월 18일

<부칙>

개정 2007년 01월 15일

<부칙>

2011년 08월 16일

<부칙>

2012년 06월 01일

<부칙>

2017년 01월 02일

<부칙>

이 약관은 회사의 사명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